

2021년 상반기 창업지원휴직 시행 계획

□ **시행근거:** 인사규정 제20조 제4항 및 노사합의서 (2020.09.25)

□ **지원자격 :** 만 56세 이상 직원 중 희망자

□ 대상분야 및 선발절차

- 대상분야 : 제한 없음(개인이 희망하는 모든 창업분야)
- 신청방법 : 신청서류(신청서, 사업계획서) 작성 후 부서별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
- 선발절차 : 1차,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선발
 - 1차(소속기관) : 사업계획서의 사업성, 준비도, 창업가 정신 등 평가
 - 2차(그룹인재실) : 1차 통과자 대상으로 결격사유 등 고려 적합/부적합 검증

□ 휴직기간 및 급여

- 휴직기간 : **최소 2년 6개월 ~ 최대 정년퇴직 시점**(기간 내 6개월 단위 연장 가능)
 - * 단 정년 잔여기간이 2년 6개월 미만인 경우, 휴직기간은 정년퇴직 시점까지로 함
 - * 의무휴직 기간 종료 후 희망시 복직 가능하며, 의무휴직 기간 중에도 희망퇴직 신청 가능
- 급여 : 휴직기간에 따라 지급

| 휴직기간 | 보수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년6개월 이상 | 최초 1년6개월 유급(월기본급 100%), 이후 무급 |
| 1년6개월 ~ 2년6개월 | 최초 6개월 유급(월기본급 100%), 이후 무급 |
| 1년6개월 미만 | 무급 |

□ 교육/컨설팅

- 창업/재취업/귀농귀촌 등 지원교육 제공

□ 시행일정

| 구분 | 일정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청/접수 | 4.7(수) ~ 4.13(화) | 부서별 인사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|
| 1차 심의 | 4.14(수) ~ 4.16(금) | 소속부서 |
| 2차 심의 | 4.19(월) ~ 4.21(수) | 그룹인재실 |
| 최종선정/발표 | 4.22(목) | 그룹인재실 |
| 사전 워크숍 | 4.26(월) | 그룹인재실 (코로나19 고려 탄력 적용) |
| 업무 인수인계 | 4.27(화) ~ 4.29(목) | 소속부서 |
| 휴직 발령 | 5.1자 | 소속부서 |

[참고] 지원교육 프로그램

□ 운영(안)

○ 대상 : 2021년 상반기 창업지원휴직자 중 희망자

○ 교육일정 : 6월 ~ 7월

○ 프로그램

* 세부교육 사항은 개별 안내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|--|
| 자가진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개인별 적성 진단 · 업무경력 점검 · 맞춤형 진로 탐색 · 개별 리포트 제공 |
| 교육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목표별 분반 교육 : 창업, 재취업, 귀농귀촌 · 전문자격증 교육지원 |
| 구체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개인별 구체화 · 전직 계획서 작성 |
| 1:1 컨설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계획서 검토 · 전문 컨설턴트와의 1:1 컨설팅 |
| 사후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직정보 제공 · 전문기관 연계 · 관련 교육 안내 |